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5학년도

중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2025학년도
중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1. 학교폭력 예방	1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3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6
4.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 근절	8
5. 아동학대 예방	10
6. 성폭력 예방	13
7. 청소년 도박 예방	14
8. 약물 중독 예방	15
9. 장애이해	17
10. 학교생활기록부	19
11. 출결	20
1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22
13. 학생 봉사활동	23
14. 학교운영위원회	25
15.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26
16.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27
17. 인성교육	28
18. 2022 개정 교육과정	30
19. 자유학기제	31
20. 경기공유학교	32
□ 참고자료	33



세바시강연

학교폭력 예방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갑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례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갑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증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러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웃,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침 병 서를, 와이파이 서를,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징후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가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이름만 불러도 놀리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학교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몸에 상처나 명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절망감(예: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모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웃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일어버리는 일이 잦다.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보인다.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4 학교폭력 신고 방법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접 신고 · 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신고함)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 안내(신고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 고려)(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117 학교폭력 신고센터)<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범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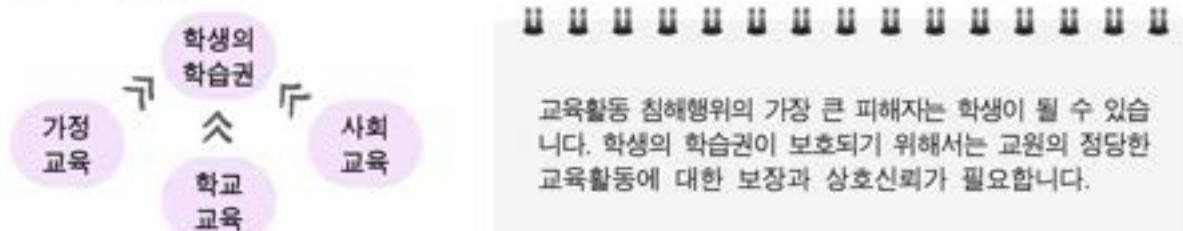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2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 학생의 학습권 보호



-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면화·인격화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매진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례
공무방해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공립학교의 학부모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업무방해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혼란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 사립학교의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위력을 보여 위협하는 경우

유형	사례
무고	<p>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징계에 불만을 풀고 교사가 촌지를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상해/폭행	<p>신체적 건강을 해손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협박	<p>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협박을 고지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가족 등 교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	<p>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개인의 가정사를 유포하는 경우 •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학생들 간 단톡방에서 교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손괴	<p>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p>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교사의 얼굴을 촬영·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불법정보 유통	<p>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는데 학생이 원격수업 화면에 음란물을 상영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에도 해당됨) • 교사와 상담하던 도중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기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을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학생이 교원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낸 뒤, 주소지에서 하락 없이 기다리거나 주소지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p>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교육활동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p>교사의 직무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원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하여 변경, 수정 작성하도록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동의 없이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 •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취파리를 부는 행위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p>학생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폰을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원격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 | | |
|---------------------|--------|-------------------------------|
| ① 학교에서의 불사 |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④ 출석정지 |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
|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 |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보호자 함께 참여,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 | |
|------------------|----------------------------------|
| ① 서면사과 및 제발방지 서약 |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위 조치 중 ②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5 교육활동 보호■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는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나 문자, 학교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고 가급적 근무 시간 중 학교에 방문합니다.
-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도 선생님이 수업 중이거나 업무 중일 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업 중인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빤히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교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규제 대상과 범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재학생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3 Q&A로 알아보는 공교육정상화법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학기의 단위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에 반드시 제시하고, 반드시 정보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적용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 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 ▶ 최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과목 등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 근절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

3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 각급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벌칙 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4 Q&A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자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소년단체·방과후 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례
신체학대	<p>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p>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 왕따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아동 정서 발달,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행위(감금, 약취, 아동노동 착취)
성학대	<p>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p>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3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화: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관할 경찰서, 시·도, 시·군·구
※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비공개, 보호조치 가능

• 신고내용

- 아동의 인적사항
-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등
- 기타 사항: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등)

• 신고시 주의사항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신고 자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
-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온폐되지 않도록 주의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셋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피해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 현장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피해아동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1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실천 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 실천 방법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봐주세요.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폭력 예방

1 성폭력이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권리(헌법 제10조 근거)

2 성폭력의 유형

- 성폭력은 ①형법상 범죄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의 범죄로 구분

관련 법률	범죄 사례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음행매개, 통신을 이용한 음란,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매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성착취를 제작·배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매매 행위, 성을 사는 행위, 강요, 알선 영업, 성착취 목적 대회(제11조~제15조)를 제외한 행위

3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법

- 성적인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 신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려주세요.
- 친구가 성적인 행동을 하려 하면 NO라고 단호하게 말하도록 하세요.
- 상대방의 침묵을 “예”로 혼동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할 때는 겁먹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알려주세요.
- 자녀가 건전한 성 가치관과 자신의 신체적 성장에 대해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성범죄 피해 신고 지원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1544-9112

- 112 경찰청



청소년 도박 예방

1 도박의 개념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거는 행동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임들이라도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거는 행동이 합쳐지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도박중독의 위험성

- 도박중독: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 대인관계 갈등, 심리적 문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 심리적 의존, 통제력 상실, 내성, 금단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삶 전체가 붕괴될 수 있음

3 청소년의 도박 중독 징후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스포츠 경기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집안의 물건이나 현금이 없어진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다.
- 자주 용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4 도박문제 예방에 도움되는 영상

------	------	------

5 도박문제 전문 상담

- 한국도박문제예방처유원 <https://www.kcgp.or.kr/>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검사(무료), 전화상담(1336), 문자상담(#1336)



약물중독 예방

1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마약류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짐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의 증가
 - 마약류를 거래할 때 특정 장소나 사람을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SNS로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마약류와 관련된 자극적 용어와 영상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마약류로 인한 피해 및 범죄 연루 위험성
 - 성장기 청소년들은 마약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중독에 이르는 속도도 훨씬 빠름. 청소년기는 또래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범죄 연루 위험성도 높아짐
-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만성 뇌 질환
 - 중독은 뇌의 변화가 일어난 만성질환으로서 치료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며, 평생의 노력이 필요함

2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 수칙

-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보기
-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3 마약류 예방 도움 받을 곳

- 상담 및 교육기관: 한국마약퇴치본부 1899-0893
 - 지원내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재활 및 지원
-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www.schoolhealth.kr>
- 입원, 외래 치료 및 상담기관: 지역사회 내 치료보호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마약범죄 신고기관: 경찰 112, 검찰 1301

4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

- 발암물질과 독성 및 유해물질 포함
 - 담배에는 나프틸아민, 벤젠, 비소, 벤조피렌, 니켈, 크롬, 카드뮴 등과 같은 제1 발암물질을 포함한 69종의 발암물질과 니코틴, 아세트산, 아세톤 등 7,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물질 포함
- 암 발병률 상승
 - 니코틴에 일찍 노출될수록 그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과 관련된 암 발병률을 상승
- 약물 중독 초래
 - 청소년기의 흡연은 다른 약물 사용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른 약물 중독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정신건강 문제
 - 스트레스나 우울, 분노, 좌절 등 부정적 정서상태일 때 흡연을 통해 일시적 완화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감정조절에 있어 약물의존도가 높아지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5 간접흡연의 위험성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류연에 포함된 많은 유해 물질 흡입
 -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부류연'에는 흡연자에게 직접 들어가는 '주류연'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뇌졸중 및 동맥경화의 위험성
 -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신장, 혈관계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 뇌졸중 및 동맥경화의 위험 증가
-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사망 중 28%가 아이들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는 부모에 의해 '3차 흡연'에 노출된 자녀는 중이염, 기침, 호흡기 증상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킴
- 전자담배의 연기도 위험
 - 전자담배 연기는 고농도의 초미세입자로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합물이 들어있음

6 금연 도움 받을 곳

- 상담 및 교육기관: 금연 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 1544-9030



장애인 이해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제10조, 11조)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제13조, 14조)
 -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금지(제19조)
 -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괴롭힘 등의 금지(제32조)
 -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배리어(Barrier)는 '장애물'이라는 뜻이고 프리(Free)는 '없애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도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노인,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부부,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 다리를 다친 사람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만약 계단 대신 경사로가 있다면 기존에 계단을 잘 이용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계단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3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
-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을 위해 별도로 실행되는 교육이기보다는 교육기관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입니다.

4 통합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증진• 자신과 다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개발• 통합교육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힘• 다양한 요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운동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 촉진• 다양한 역할 모델과의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향상• 또래들과 우정을 형성할 기회 가짐

- 통합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5 통합교육 Q&A

Q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학생들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울 기회는 부족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어떻게 지내라고 알려주면 좋을까요?

-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도와주거나 특별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가정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 만약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럴 때 어떻게 적절히 반응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마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 관리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입니다. 학생평가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적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항목	내용
인적·학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 입력 •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
출결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수 기록 •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
진로·희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 •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
자유학기 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로 실시한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 • '특기사항'에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
독서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단위로 입력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
교과학습 발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

출결

-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
- 결석: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1 출석

- 개별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도 재적교 수업일수의 2/3 이상
-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조퇴·결과의 횟수는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2/3이상이면 수료 가능
- 당해연도 재취학 학생은 유예·면제 등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2/3 이상이면 수료 가능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재취학 등)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하되, 중복되는 결석일수는 제외

2 결석

가. 출석인정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임양	• 학생 본인	20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나.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미인정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파,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별도로 학교 밖에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

2 운영 내용

- 학습 유형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출석 인정 기간: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20일 이내
 - 운영단위: 1일 단위로 운영,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허가 가능
 - * 출석인정일수, 불허기간,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3 운영 절차



-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 체계 유지
-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승인 및 보고서 제출 가능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학생 봉사활동

1 학생봉사활동 실적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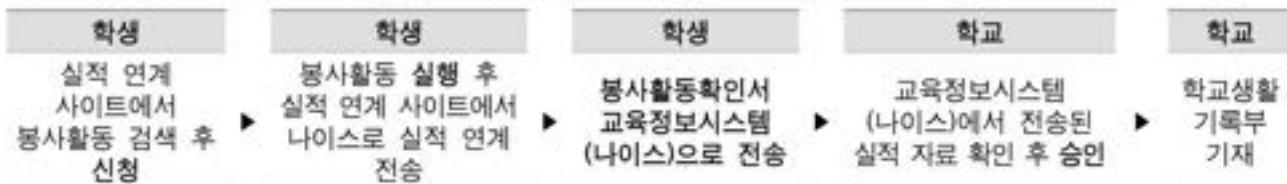
- 개인 봉사활동 시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지도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 실시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인정기준(정규수업과 봉사활동 시간의 합은 최대 8시간임)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 다만, 현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 인정(만16세이상)
- 학생봉사활동 인정 관련 유의사항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현웃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활동비(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학생의 장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는 인정 불가
 - '선플달기'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초 40자, 중 50자,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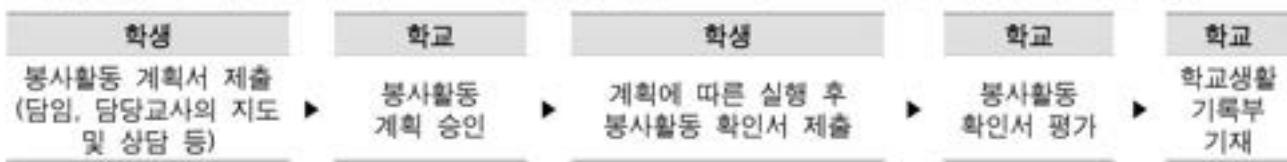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내용 확인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활동,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4 학생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 1365 자원봉사포털, <http://www.1365.go.kr>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https://www.vms.or.kr>
- DOVOL(청소년자원봉사), <https://www.youth.go.kr>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기구로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설치·운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자격기준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을 원칙으로 함 • (공립)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사립)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교장이 위촉 ※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됨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사업자, 해당 학교 졸업자 등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립의 경우 자문사항)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사립의 경우 심의 제외)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사립의 경우 심의 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나이스대국민서비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1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서비스는 열람 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이용 방법

학부모서비스 접속

<https://parents.neis.go.kr> 접속

회원가입 및 약관동의

신규 회원가입(기존회원 포함)

※ 이전 학부모서비스 회원은 자녀 등록 시 연동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등록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onepass.go.kr)
- 간편인증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 학부모서비스 회원정보 연동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 (1)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 (2)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3) 간편인증 로그인

학부모 자녀등록

* 학부모서비스 메인 → '자녀등록하기'

→ 자녀정보 입력 및 조회(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 자녀등록 및 정보 열람 요청

※ 기존 학부모서비스 자녀 정보 자동으로 연동

나이스플러스 학생 승인

나이스플러스 학생 로그인

→ 정보관리 - 보호자승인관리

학부모 정보 확인 후 정보 열람 '동의'

학부모서비스 이용

자녀 정보 선택

→ 학부모서비스 이용

※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앱스토어, Play스토어 등에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 검색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1 학교안전사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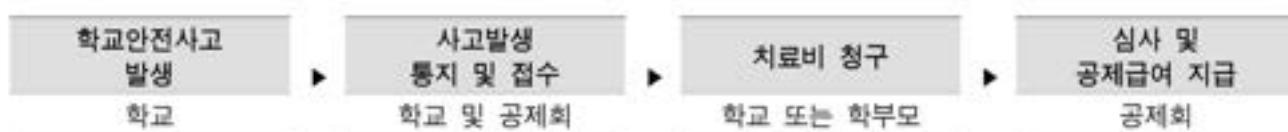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안전사고 종류

교육활동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절차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4 준비 서류(필수)

- 공제급여청구서
-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성교육

1 경기인성교육 목표와 추진 개요

목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 함양		
추진 개요	Culture 문화조성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Curriculum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연계 상시적 인성교육	Community 가정·지역사회 연계 가정·지역 사회 연계 인성교육 강화

경기 인성교육 모델(4인성 범주)



2 2025년 우리 학교 인성교육, 이렇게 합니다.

※ 각 학교 내용으로 수정

-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 인성송을 통한 특색있는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 학생자치회가 선정한 '이달의 종소리' 운영
- 협력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 학생의 자율과 책임을 배우는 학생생활규정 운영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 학교 자율성 기반 놀이수업 재구성 및 인성교육 수업설계
 - 학년별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 수업 및 인성교육 수업 재구성 운영
-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감성 및 정서 함양
 - 인성교육 연계 1인 1예술 특색 활동 활성화

-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
 -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 아침 운동 프로그램 확대
-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융합된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을 통한 디지털 시민역량 신장

3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 친밀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요

- 1일 1칭찬의 시간 갖기
- '스마트폰 없는 날' 실천하기
- 가족이 함께하는 '공감 소통데이' 운영하기
- 온 가족이 함께 가훈 만들기
- 가정 내 '가족의 날' 운영하기

•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실시해요

'가족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어휘를 익히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상식과 지식을 섞어 문화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 하버드대 연구 결과

- 주 1회 이상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 배려가 있는 대화의 시간 갖기 (1일 1주제 정해서 생각 나누기)
- 예절 교육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

• **자녀의 마음을 여는 대화를 나누어요**

- 자녀의 행동에 담긴 마음 읽어주기
-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하기
- 자녀와 부모의 소통은 '나 메시지'로 하기

너 메시지 표현	나 메시지 표현(행감바)
네 옷을 제대로 벗어 놓아야지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 입었던 옷이 여기저기 널려있으니 거실이 지저분해서 •(감정) 엄마 마음이 심란해 •(바람) 벗은 옷은 옷걸이에 걸어두면 좋겠어

* 인성교육 함께 해요 *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이자 둘모델입니다.

부모님께서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자녀는 건강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시수 편성 증감 범위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정보 시수 확대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8개 이내 제외 과목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 선택 교과(군)의 교양 성격의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과목
선택 과목 개설	2개 이상의 선택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 보장
창의적체험활동 편성·운영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재구조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매 학기 편성 운영(연간 34~68시간 이내), 3개년 간 총 136시간 편성·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 운영, 연간 68시간 편성·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체육으로 대체 가능
자유학기 활동 편성 영역 및 시간 조정	두 개 영역 (주제선택 활동, 진로탐색 활동), 한 학기 102시간 편성
신설	학교자율시간, 진로연계교육

2 학교자율과정과 학교자율시간

구분	학교자율과정	학교자율시간
근거	2021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편성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수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함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함
성격	자유학기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주도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함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
운영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융합활동, 마을과 연계한 교육 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진로연계 활동 등으로 편성·운영함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함

3 진로연계교육

- 학생들이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자유학기제

1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 학기(1학년 1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2 운영 개요

- 자유학기는 교과 활동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됩니다.

교과활동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영어 등



자유학기 활동

- 주제선택활동
- 진로탐색활동

- 학교별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2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주제 선택 활동

- 교과 연계, 범교과 영역
- 다양한 전문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동기 유발, 전문적 학습 기회 제공
(예시) 마을에 남긴 시인을 찾아서(인문학 기행), 꿈꾸는 시(소설) 쓰기, 시화 그리기, 과학을 잡자, 신나는 수학, 영어 신문(잡지) 만들기, 영어 퍼즐(게임), 팝송으로 배우는 재미있는 생활영어 등

진로탐색활동

-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
-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예시) 진로 강연, 진로 탐구, 포트폴리오 제작, 진로 체험학습, 직업 탐방, 모의 창업 등



경기공유학교

1 경기공유학교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

2 프로그램 운영 개요



3 프로그램 유형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2023 통합교육 틀아보기(중등)
- 경기도교육청, 2024 자유학기제 안내 리플렛
- 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 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4 (학부모용)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국립특수교육원, 2014, 통합학급 속 인권 이야기
- 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go.kr
-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 학교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04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선형교육예방을 위한 연수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2021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학부모)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 2022 도박문제 없는 학교만들기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성인편), 2020

